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영호



여수시 조례 제2232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32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u>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u></p> <p>2. ~ 8. (생략)</p>	<p>제6조(준용) ----- ----- ----- ----- -----</p> <p>1. <u>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2. ~ 8. (현행과 같음)</p>